

즉석 컵라면 수입자 라벨 표기 방법

조사회신일 : 2016.7.27

품목 : 즉석 컵라면

I. 상품개요

- 상품명
- 즉석 컵라면
- 상품 형태
- 쌀첨가 즉석 라면

II. 수입자 라벨 표시안

1. 수입자 표기

명칭	즉석 컵라면
원재료명	면(밀가루, 쌀가루, 옥수수전분, 식염), 분말스프(식염, 설탕, 양파), 고춧가루 * 정보 보호상 일부 성분은 생략함
첨가물	조미료
내용량	100g (면 90g)
상미기간	Yyyy.mm.dd
보존방법	직사 광선, 고온 다습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십시오.
원산국명	한 국
수입자	○○○

조리방법 : 1.뚜껑을 절반정도 개봉하여 뜨거운물을 선까지 채우십시오.

2.뚜껑을 닫고 3분후에 드시면 됩니다.

사용상의 주의 :뜨거운 물을 부으면 컵이 매우 뜨거워짐으로 화상에 주의하십시오.

·전자레인지로 조리하지 말아주십시오.

·개봉후에는 되도록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.

·합성보존료/합성착색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

·분리수거는 자치체의 구분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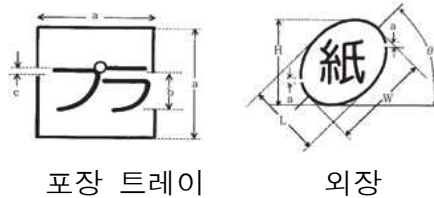
·상품에 이상이 있는경우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. 영양성분 표시

영양성분표시 100g 당			
에너지	kcal	탄수화물	g
단백질	g	식염상당량	mg
지질	g		

3. 문자 크기 및 재활용 마크

- 일괄 표시 및 영양 표시의 글자 크기가 8 포인트 이상임을 확인하십시오.
(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㎢이하인 경우에는 5.5포인트 이상 활자 기재.)
- 플라스틱 마크의 한변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m 이상입니다.
- 문자크기는 JIS Z8305규격 (1포인트=0.3514mm)에 따르십시오.



III. 기타사항

1. 참고 표기 사항

- 표시에 대하여 명확히 의무화 되어있는것은 아니으나 소비자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. 글자 크기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, 사용자가 보기쉬운 크기로 표시하도록 해주십시오.
- 표시 사례
 - 본 제품의 제조과정에서는 ○○·○○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.

2. 표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

- 식품표기 기준에서의 금지표시
 - 실제 상품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게끔 오인할만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.
 -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
- 유아용 규격적용식품 이외의 식품은 유아용 규격적용식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혼란을 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분별생산유통관리가 확인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 이외의 식품은, 비유전자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조직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속하는 작물 이외의 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해당 농산물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나트륨소금을 첨가한 식품은 나트륨량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기능성 표지식품이외의 식품은 영양기능성식품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표시가 있습니다.
- 보건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은 보건기능식품과 혼동되는 명칭, 영양성분의 기능 및 특정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듯한 용어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시각장애인이 우유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지붕형 종이팩 용기의 상단의 일부를 파내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일본 농림규격의 등급심사를 통과한 식품 이외의 식품은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그 외의 내용물을 오인시키는 문자, 그림, 사진 등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
○ 공정경쟁규약상의 금지표시

-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「내추럴」 「천연」 「생」 「프레쉬」 등의 해당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「최우량」 「최고급」 「상급」 「고급」 등의 해당상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「수타풍」 「숙성」 등의 제조방법의 우량성을 의미하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즉석 생면(즉석면 중에서 면을 찌거나 삶아, 유기산용액처리를 한 후에 가열살균한 것) 이외의 것에 생면을 의미하는 표기를 금지합니다.
- 냉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「중화면」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「대를 잇는」 「원조」 「대표」 「최고로 오래된」 등의 전통성, 역사성을 의미하는 표기를 금지합니다.

- 원재료의 산지 또는 해당상품의 원산국에 대해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건강 미용 효능 또는 해당 상품의 원산국에 대하여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즉석면의 상품명, 상표, 의장(意匠)등의 사항에 대해,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제조, 판매와 관련하여 동일, 혹은 확연하게 유사한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상을 받은 사실 또는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수상이나 추천을 받은것 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내용물의 모호, 품질보전 또는 제조기술상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확연하게 과대한 용기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
-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상품에대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하고 이들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즉석면이 아닌 것을 즉석면이라고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상품의 내용 또는 거래조건에 대해, 실제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다라고 일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있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
3. 관계법

식품표시기준

(http://www.caa.go.jp/foods/pdf/150320_kijyun.pdf)